2022 서브노트(객세 및 세무회계 목차) 정오표(3) – 6. 7. 현재

I. 수정사항 개요

1.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2022년 3월 초에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당 개정사항이 2차 시험일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개정사항을 2쇄 서브노트에 반영하였습니다.(1쇄 서브노트는 정오표 반영) 그러나, 2차 정오표 공지일인 2022년 6월 7일 현재에도 해당 개정사항이 심의 중에 있으므로, 법률 개정 절차를 고려할 때 회계사 2차 시험일인 2022년 6월 2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의 서브노트 반영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

2022년 5월 31일에 주택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요건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③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요건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u>2년</u> 내 종전주택을 양도

③ <u><삭제></u>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①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2. 5. 10일부터 2023. 5.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① 세율 : 기본세율(6~45%)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II, 수정사항

1. 신용카드소득공제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103	상4	1. 공제대상액 : (① 또는 ② 또는 ③)+④ 개정	1. 공제대상액 : ① 또는 ② 또는 ③
	상19	④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7]×10%+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8]×10% 개정	< 삭 제 >
	하10	(2) 추가한도 : Min[전통시장사용분×40%, 100만원]+Min[대중교통이용분×40%, 100만원]+Min[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100만원]+Min[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10%+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10%, 100만원] 개정	(2) 추가한도 : Min[전통시장사용분×40%, 100만원]+Min[대중교통이용분×40%, 100만원]+Min[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100만원]
2-104	상9	7.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05%)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8.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2022년 전통시장사용분-(2021년 전통시장사용분×105%)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삭 제 > < 삭 제 > 7.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2. 월세세액공제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132	하9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12%(또는 15%*) 개정 개정 2022년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10%(또는 12%*)

3. 양도소득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165	상7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 충족시 1주택 a.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 b.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 충족시 1주택 a.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 개정 b.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개정 이내 양도
2-166	하14	(2)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건축법의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2주택 보유시에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1주택 보유요건의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 삭 제 > 개정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부터 폐지되었다.
2-176	하12	*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특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은 제외	*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특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은 제외. 다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185	상6	< 추 가 >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